#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9

발의연월일: 2024. 6. 24.

발 의 자:정점식·고동진·구자근

서명옥 · 김장겸 · 장동혁

김태호 · 김도읍 · 서범수

유상범 • 곽규택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공간을 활용하는 해상풍력과 조력·파력 등 해양에너지는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이행목표 달성,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 여건상 중요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임.

하지만, 그간 해양공간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입지 등에 관한 행정계획의 부재로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어업인 등 해역이용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고, 난개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환경과 어업활동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지 발굴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해외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정부가 어업활동 영향, 해상교통 영향,

해양환경·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공간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적합입지를 발굴하도록 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양공간에서 질서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신·재생에너지 설치가능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해양공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같은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해양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가 설치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양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위치·규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7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치가능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
	지사는 해양공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같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해양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가 설치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u>다.</u>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
	하는 경우에는 해양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의 종류・위치・규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